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2. . .	
연월일	(제 회)	

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(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
2.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
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무
4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
5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
6.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·연구 사업에 관한 사무

7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8.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·자격
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
9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(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</u> <u>2.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건 의료인력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</u> <u>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 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무</u> <u>4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건</u>

현행	개정안
	<u>의료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</u> 5. <u>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건 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</u> 6. <u>법 제15조에 따른 조사·연구 사업에 관한 사무</u> 7. <u>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</u> 8. <u>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·자격 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</u> 9. <u>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</u>